

2026. 4.

미국 상원, 「시각예술 창작자 저작권 개편 법안」 발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연구원
손휘용

1. 개요

피터 웰치(Peter Welch) 美 상원의원은 2025년 12월 17일, 시각예술 창작자(visual artist)를 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개편하는 「시각예술 창작자 저작권 개편 법안」¹⁾을 발의했다. 본 법안은 사진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조각가 등 대량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현행 제도에 따른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침해 소송제기 등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러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상당하여, 특히 수백·수천 점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등록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과 대량 창작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주요내용

1) 의회도서관 납본 의무 면제

법안은 저작권법 제407조 ‘의회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407. 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Library of Congress)’ 의무 적용 대상에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물리적 복제물 제출을 전제하는 납본 제도가 디지털 중심으로 유통되는 현대 시각예술 저작물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등록시 복제물 제출 요건

법안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시 물리적 복제물 제출 요건 대신 ‘완전한 전자 복제물(complete electronic copy)’ 제출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상 등록 신청 시에는 ‘완전한 최우량판²⁾ 복제물(complete copy of the best edition)’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S. 3517 – Visual Artists Copyright Reform Act of 2025, 이하 ‘법안’

2) 최우량판(the best edition)이란, 납본일 전에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의회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을 의미한다.

디지털 파일 기반 창작·유통 환경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로, 창작자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록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3) 저작물 다량등록

법안은 3,000점 이내의 사진저작물(photographs)에 대해 단일 신청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량등록(group registration)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제도상 제한된 범위의 그룹 등록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실제 창작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사진작가의 경우 단기간에 수천 장의 사진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개별 또는 소규모 단위 등록만 허용되는 구조에서는 시간·비용 부담이 과중하였다. 다량등록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량 창작 저작물이 공적 등록 체계 안으로 폭넓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등록 유예

법안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 ‘등록 유예(deferred registration)’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등록 신청과 실질적 심사 절차를 분리하여, 창작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등록 신청만 해두고 정식 심사는 권리 행사가 필요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 등록시 공표일 기재 의무 면제

법안은 1989년 3월 1일 이후 창작된 미국의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해 공표일 기재 의무(제 409조 (a)(8))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일 기재 요건은 실무상 등록 신청 과정에서 오류 및 보정 부담을 초래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해당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식적 하자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6) 등록 수수료 부담 완화

법안은 개인 저작자 및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회화·그래픽·조각 저작물에 대해 등록 연회비(subscription)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창작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회비 방식은 대량 창작자의 등록 비용을 구조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사진에 대한 제3자 등록부 신설

법안은 사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청이 인증한 제3자 등록부에 납본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저작권청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 외에 민간 기반의 등록 인프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법안은 사진, 회화, 그래픽 및 조각 등 대량으로 창작되는 시각예술 저작물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 개편안이다. 특히 다량등록, 등록 유예, 전자 복제물 제출 허용, 제3자 등록부 인정 등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서의 창작 현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은 미국사진작가협회(ASMP), 미국전문사진가협회(PPA), 미국보도사진가협회(NPPA) 등 주요 시각예술 창작자 단체들로부터 공개적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 향후 입법화될 경우, 대량 창작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등록제도의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등록제도 개편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Visual Artists Copyright Reform Act of 2025, 'VACRA', S.3517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3517/text>).
- Senators Peter Welch (D-Vt.); Marsha Blackburn (R-Tenn.), Visual Artists Copyright Reform Act (VACRA) of 2025, (<https://www.welch.senat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1217-Visual-Artists-Copyright-Reform-Act-VACRA-of-2025-One-Page.pdf>).